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여객자동차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1호 중 “더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목”을 “허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3호 중 “서목”을 “허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4호 중 “저목2)”를 “노목2)”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운송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사업면허취소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사업면허취소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	법 제35조제			

받은 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2)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3)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4)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1항제3호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10일)	사업일부정지(20일)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운행정지(3일)	운행정지(5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전용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감차명령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사업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5호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바.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6호			
1)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2)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차명령		
3)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4)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감차명령		
사.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제1항제7호			
1)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일부정지(15일)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45일)
2)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을 제외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면허취소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제1항제8호	사업면허취소		

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 작하지 않은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 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 작하지 않은 경우 2) 신설된 노선 또는 운행계통에 서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 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9호	사업면허취 소		
차.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 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 한 경우 2) 신고한 운임 외에 부당한 운 임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0호	사업일부정 지(5일)	사업일부정 지(10일)	사업일부정 지(20일)
카.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 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1호	사업일부정 지(3일)	사업일부정 지(5일)	사업일부정 지(10일)
1)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 지(30일)	사업일부정 지(50일)	
1)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 지(10일)	사업일부정 지(20일)	사업일부정 지(30일)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	법 제35조제 1항제12호	사업일부정 지(30일)	사업일부정 지(50일)	

한 경우			
가) 미운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 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60일)	사업일부정 지(90일)	감차명령
3)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영업소 ·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 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30일)	사업일부정 지(50일)	
4) 노후차의 대체 등 전용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 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용차 량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차량 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는 제외한다.	사업일부정 지(60일)	감차명령	
5)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 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 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 지(5일)	사업일부정 지(10일)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3일)	사업일부정 지(5일)	

파.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3호	사업일부정지(20일)	사업일부정지(40일)	사업일부정지(60일)
하. 법 제27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4호	사업면허취소		
거. 1년에 3회 이상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5호	운행정지(10일)		
너.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6호	감차명령	노선폐지명령	
더.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6의2호	사업일부정지(90일)	감차명령	
러.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6의3호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120일)	사업일부정지(180일)
머.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6의4호	사업일부정지(90일)	사업일부정지(180일)	

버.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 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6의5 호			
1)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 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 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2)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3)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4)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게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지 않 은 경우		사업일부정 지 (10일)	사업일부정 지 (20일)	사업일부정 지 (30일)
5)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사 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 (5일)	사업일부정 지 (10일)	사업일부정 지 (15일)
6) 하차문이 있는 전용차량에 압 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 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 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 (30일)	사업일부정 지 (60일)	사업일부정 지 (90일)
7)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		사업일부정	사업일부정	사업일부정

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지 (5일)	지 (10일)	지 (15일)
8)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 지 (5일)	사업일부정 지 (10일)	
9)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 (30일)	사업일부정 지 (60일)	사업일부정 지 (90일)
11)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 지 (30일)	사업일부정 지 (60일)	사업일부정 지 (90일)
12)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 (20일)	사업일부정 지 (40일)	사업일부정 지 (60일)
13)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 지 (30일)	사업일부정 지 (60일)	사업일부정 지 (90일)
14)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	사업일부정 지	사업일부정 지	

송한 경우	(3일)	(5일)	
15)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 을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운행정지	
16)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	(3일) 사업일부정 지	(5일) 사업일부정 지	사업일부정 지
17)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 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10일) 사업일부정 지	(20일) 사업일부정 지	(30일)
18)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 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 은 경우	(5일) 운행정지 (5일)	(10일)	
19)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 수 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 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사업용 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된 경 우	감차명령		
나) 사업용 자동차 1대당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 이 된 경우	감차명령		
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 지수가 60 이상이 된 경우 (<u>위반건수</u> × 10)	감차명령		

보유대수 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된 경우 $\left(\frac{\text{위반건수}}{\text{보유대수}} \times 10 \right)$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20)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21)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서.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법 제35조제1항제16의6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 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호	(10일)	(20일)	(30일)
어.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 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 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6의7 호	사업일부정 지 (10일)	사업일부정 지 (20일)	사업일부정 지 (30일)
저.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6의8 호	사업일부정 지 (5일)	사업일부정 지 (10일)	사업일부정 지 (15일)
처. 1년에 3회 이상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 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7호	사업일부정 지(5일)		
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8호			
1)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5일)	사업일부정 지(10일)	사업일부정 지(15일)
2)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진술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 지(5일)	사업일부정 지(10일)	
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19호	사업면허취 소		
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노선 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	법 제35조제 1항제20호	사업면허취 소		

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1호	사업면허취소		
고.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2호			
1)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40명 이상		감차명령 (10대감차)		
나) 30명 이상 39명 이하		감차명령 (8대감차)		
다)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 (6대감차)		
라) 10명 이상 19명 이하		감차명령 (4대감차)		
마) 8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일부 정지(180일)		
바) 5명 이상 7명 이하		사업일부 정지(120일)		
사) 1명 이상 4명 이하		사업일부 정지(60일)		
2)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40명 이상		감차명령		

나) 30명 이상 39명 이하		(5대감차)		
다)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 (4대감차)		
라) 10명 이상 19명 이하		감차명령 (3대감차)		
마) 3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일부정 지(120일)		
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법 제35조제 1항제22호의 2	사업일부정 지(60일)		
1)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 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 수÷보유대수×10)가 4 이상 이 된 경우		사업일부정 지(75일)		
2)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 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 수÷보유대수×10)가 10 이 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3)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 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 수÷보유대수×10)가 12 이 상이 된 경우		사업면허 취소		
4) 5대 미만의 전용차량을 보유 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 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1건의 교통사고		사업일부정지(30일)		
나) 2건의 교통사고		사업일부정지(60일)		
다) 3건 이상의 교통사고		감차명령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차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파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 중 “파목1)”을 “머목1)”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 2제1항			
1)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80	360	540
2)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30	60	120
3)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		180	360	540

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4)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9	15	
나.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제1항	180	360	540
다.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제7호 및 제35조의2제1항	90	180	270
라.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0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30	60	120
2) 신고한 운임 외에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8	30	60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1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80	300	
2)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0	120	180
바.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2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가) 미운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		180	300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360	540		
3)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180	300		
4) 노후차의 대체 등 전용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용차량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차량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360			
5)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	60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8	30		
사.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1항	120	240	360	
아. 1년에 3회 이상 법 제28조를 위반하	법 제35조	30	—	—	

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5호 및 제35조의2제1항				
자.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의2호	540			
차.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의3호	360	720	1,080	
카.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의4호	540	1,080		
타.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의5호				
1)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0			
2)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5	30		
3)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5	30		
4)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60	120	180	
5)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		30	60	90	

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6) 하차문이 있는 전용차량에 압력감지 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 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180	360	540
7)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여 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30	60	90
8)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 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	60	
9)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 우	9	15	
10) 전용차량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 를 사용한 경우	180	360	540
11)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 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80	360	540
12)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 동차를 운행한 경우	120	240	360
13)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 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80	360	540
14)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18	30	
15)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 지 않은 경우	9	15	
16)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0	120	180
17)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 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0	60	

18)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 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5			
19)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 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 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 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 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		180	360	540	
20)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 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파.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 의6호	60	120	180	
하.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 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 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 의7호	60	120	180	
거. 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 의8호	30	60	90	
너. 1년에 3회 이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7 호 및 제35 조의2제1항	30	—	—	
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	법 제35조 제1항제18				

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	60	90
2)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0	60	
러.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2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8명 이상 9명 이하		1,080	—	—
나) 5명 이상 7명 이하		720	—	—
다) 1명 이상 4명 이하		360	—	—
2)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명 이상 19명 이하		720	—	—
나) 3명 이상 9명 이하		360	—	—
며.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2호의2 및 제35조의2제1항			
1)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 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4 이상이 된 경우		450	—	—
2) 5대 미만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1건의 교통사고		180	—	—
나) 2건의 교통사고		360	—	—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표 가목4)의 위반내용란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고의·중과실로 위 표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해야 한다.
4. 위 표 바목1)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1)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일괄 처분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text{일괄 처분금액} = \left[1\text{회} \times \frac{\text{바목1)의 과징금 금액}}{\text{과징금 금액}} \right] + \left[\frac{\text{추가 위반 횟수}}{(\text{전체 위반 횟수}-1)} \times \frac{\text{바목1)의 과징금 금액}}{\text{과징금 금액}} \times \frac{1}{2} \right]$$

5. 위 표 아목 및 너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행정처분일 이후 추가로 적발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6.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7. 위 표 머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8. 위 표 머목1)에 따른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ext{사고지수} = \left(\frac{\text{변동 전 사고건수}}{\text{변동 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 \left(\frac{\text{변동 후 사고건수}}{\text{변동 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50	75	100
라.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4호	360	720	1,000
마.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5호	540	1,000	1,000
바.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 제2항제1호	10	15	20
사.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의2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0	30	50
아.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 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50	50	50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25	50	5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 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50	75	100
카.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 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 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3항제1호	20	30	50
타.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 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3항제2호	20	30	50
파.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3항제3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20	20	2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 호 · 제7호 · 제7호의2 · 제7호의3 및 제8호		10	10	10

를 위반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가)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	50	50
나) 가)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10	10
하.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4항	3	5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연 락 처	(044) 201 - 5121